

울산광역시북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

선	기 관 의 장
람	

제 1229 호 2020. 4. 16.(목)

고 시

-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0-67호[도로명주소 변경 고시]..... 1

공 고

-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0-483호[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를 위한 열람공고]..... 2

안 내	○ 북구 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전주 수요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○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○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☞ 북구 홈페이지(www.bukgu.ulsan.kr) → 구정소식 → 알림마당 → 북구공보
--------	--

회								
람								

발행 : 울산광역시북구 편집 : 기획홍보실 (☎241-7125, 행정7125)

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0 - 67호

도로명주소 변경 고시

우리구 관내 도로명주소 변경 건물에 대하여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8조제2항에 따라 변경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0년 4월 16일

울산광역시 복구청장

○ 도로명주소

종전주소	새로 부여된 도로명주소	도로명 고시일	도로명 변경사유
정자동 60	정자7길 39-13	2020. 4. 16.	신청에 의한 변경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복구 민원지적과 (☎052-241-7583,7585)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복구청 홈페이지(www.bukgu.go.kr)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2019. 4. 16.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.

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0 - 483호

도시계획시설(도로 : 소로2-136호선)사업 실시계획(변경)을 위한 열람공고

1. 도시계획시설(도로: 소로2-136호선)사업 실시계획(변경)을 위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며,
2.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보시기 바라며, 의견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0년 4월 16일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1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
가. 종 류 : 도시계획시설(도로: 소로2-136호선)사업

나. 명 칭 : 호계동 수동중앙길 일원 (소2-136호선) 소방도로 개설공사

2. 위 치 :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936-86번지 일원

3. 사업개요

가. 당 초 : 도로개설 L=237.5m, B=8.0m

나. 변 경 : 도로개설 L=557.5m, B=8.0m

구 분	시설명(노선명)	규 모		비고
		폭(m)	길이(m)	
도 로	소로2-136호선(1공구)	8.0	237.5	당초
	소로2-136호선(2공구)	8.0	320.0	변경(추가)

4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
가. 성 명 : 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나. 주 소 :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(연암동 1004-1)

5. 사업기간

가. 당 초 : 2018. 10. 4. ~ 2019. 12. 31.

나. 변 경 : 2018. 10. 4. ~ 2022. 12. 31.

6. 수용할 토지·지번·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서 : 붙임 명세서와 같음

7. 열람기간 : 공보 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

8. 열람장소 : 울산광역시 북구청 건설과

9. 기타 관계도서는 열람 장소에 비치하오니 열람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건설과(☎052-241-7873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의 견 서

『호계동 수동중앙길 일원(소2-136호선)도로개설』

1. 제 목		
2. 당사자	성명(명칭)	
	주 소	
3. 의 견		
4.기 타		
<p>『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 margin-right: 100px;">2020. . . .</p> <p>의견제출인 주 소 : 성 명 : (서명 또는 인) 전화번호 :</p> <p>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</p>		
비 고	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	